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9가단10086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1. 주식회사 C

2. D

변론 종결2019. 8. 20.

판결 선고2019. 9. 24.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197,26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10.부터 2019. 8. 6.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연 15%로 구하는 이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 이후로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판사김동국

별지